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수칙 안내

삼례중학교
가정통신문 제 111호

2023년 1월 30일

(우)55341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로 53-23

☎ 063-291-2624,

<http://samrye.m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적용 시점 | 2023.1.30.(월) |
| 조정 |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마스크 자율적 착용 |
| 착용 의무 유지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 착용 권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합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2023년 1월 30일

삼례중학교장 (직인생략)